

# 08

## 여성·인사·법무·통일

### 1.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☎ 02) 2100-6203

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'새일센터') 서비스가 확대됩니다.

-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,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,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.

※ 새일센터: 구인구직관리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 등 종합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 
(2015년)147개소 → (2016년)150개소

※ 온라인 취업지원: 꿈날개(dream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진로상담, 경력개발코칭,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, 취업지원 등 일대일 맞춤형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 
온라인 취업상담 지역 (2015년)8개 시도 → (2016년)17개 시도 (전국)

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(IT, 콘텐츠, 디자인 등) 진출을 돕는 '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' 공모사업을 시범운영(10억원, 20여개 과정)하고,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(5,480명 → 5,680명)합니다.

※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 (2015년) 5,480명 → (2016년) 5,680명

(참고) 새일센터 대표전화 ☎1544-1199

####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

- 추진배경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, 취업연계,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
- 주요내용 ①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 
②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(20여개 과정)  
③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(5,480명 → 5,680명)
- 시행일 2016년 상반기

## 2.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

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☎ 02) 2100-6315

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됩니다.

-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 (매 3년 단위) 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.
  - ※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약 1,500여 명에게 건강검진 진원
-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- ※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: (2015년) 1,500여 명 → (2016년) 15,000여 명

(참고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☎ 1577-1000

###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

-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
- 주요내용
  - ① 검진대상 : 학교 밖 청소년
  - ② 검사주기 : 3년마다 실시
  - ③ 검사항목 : 상담 및 진찰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

## 3.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
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☎ 02) 2100-6326

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지원서비스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됩니다.

- 2016년부터는 전국 78개소의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\*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  - \* ▲ 맞벌이 가정의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, ▲ 한부모, 조손,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, ▲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
- 또한,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간·주중 중심에서 야간·주말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.

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mogef.go.kr) > 정책안내 > 가족 > 통합적 가족지원 >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

###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서비스

- 추진배경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
- 주요내용
  - ① 지원대상 확대 :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
  - ② 지원시간 확대 : 주간·주중 중심 → 야간·주말 운영 확대
  - ③ 지원서비스 확대 :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4.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☎ 02) 2100-6203

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근거하여 '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' (3년 주기)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. (조사대상 : 8천여 가구)

-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,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,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입니다. 조사 결과는 2016년 12월 중 발표됩니다.

(참고) 1차 실태조사 결과 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mogef.go.kr) > 정책안내 > 인력개발 > 여성새로일하기센터 > 자료실 >

'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'

###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

- 추진배경 임신과 출산,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의 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 지원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정책자료 구축
- 주요내용
  - ① 조사대상 : 25세~59세의 결혼,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(예정)
  - ② 조사방법 : 가구방문, 개인 면접조사
  - ③ 조사내용 :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,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현재 일자리 상태,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## 5.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

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☎ 02) 2100-6195

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됩니다.

※ 여성인재 아카데미 : 저출산·고령화 시대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, 여성 중간관리자 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의 여성중간관리자 대상 맞춤형 조직역량강화 교육 지원

- 2016년부터는 그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 지역 여성인재들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,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(참고) 교육 신청 문의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☎ 02) 3156-6101

###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조직 내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대상 확대
- 주요내용
  - ① 대상확대 :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재직여성 →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추가
  - ② 지원 내용 : 개인별 사전역량진단, 전문가조언, 멘토링·네트워크 등 맞춤형 프로그램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## 6.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

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☎ 02) 2100-6195

여성인재 DB\*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.

\* 여성인재 DB : 여성리더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해 DB에 수록

- 2016년부터는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,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경력별(초급·중간관리자, 시니어(중·고급)관리자, 임원급 등) 직종별(회계사, 의사, 변리사, 변호사, 언론인 등)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.

###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

- 추진배경 여성인재 DB 등재자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
- 주요내용
  - ① 임원급 이상 → 네트워크 구축 지원
  - ② 중·고급 관리자 → 고위관리자 조직역량 교육, 네트워크 역량교육(심화)
  - ③ 초·중급 관리자 → 중간관리자 조직역량 교육, 네트워크 역량교육(기초)
  - ④ 전문직종 종사자/지역여성리더 → 전문직종별 역량 교육 및 네트워크 역량 교육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## 7.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

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☎ 02) 2100-6313

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\*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·재산(금융, 부채 등)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
\*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 : 사회·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

- 지금까지는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 했던 자료가 많았으나, 2016년부터는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됩니다.
- 소득·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은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·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mogef.go.kr) > 뉴스·소식 > 보도자료 > “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간단히, 지원은 신속히”

###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 변경

- 추진배경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등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적시 지원
- 주요내용 ① (기존) 소득재산 조사 → (변경)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가구 소득확인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8.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☎ 02) 2100-6257

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,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됩니다.

- 전국 2,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 
※ (2015년) 1,460개 동아리, 각 100만원 지원 → (2016년) 2,100개 동아리, 각 125만원 지원
-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는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·운영\*됩니다.  
\* 연 1회 이상 동아리 연합활동, 정기 및 수시회의,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

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선정·시상(여성가족부장관상 등)되고, 우수 사례로 보급됩니다. 거짓 혹은 부정하게 운영된 동아리는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.

###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청소년들이 자립적·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·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주요내용 ① 동아리 지원확대 : 1,460개 각 100만원 → 2,100개 각 125만원  
② 지자체별 동아리활동 총예산의 10% 내외 한도에서 지역 동아리 연합회 운영  
③ 우수동아리 선정, 시상 및 사례 보급  
④ 거짓 혹은 부정하게 운영한 동아리 1년간 지원 중단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## 9.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☎ 02) 2100-6275

가출,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·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 운영됩니다.

※ CYS-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, 경찰청,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, 상담·보호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
또한,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상담 서비스'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,044명에서 1,066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.

(참고)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☎ (지역번호)1388

###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·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
- 주요내용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 지역 확대(200개 → 222개)  
② 청소년동반자 확대(1,044명 → 1,066명)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## 10.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☎ 02) 2100-6273

위기 청소년에게 상담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됩니다.

- 지금까지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하여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습니다.
- 2016년부터는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 하반기(10월)로 변경함으로써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- 다만,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응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자격시험을 2회(3월, 10월) 실시합니다.

###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

- 추진배경 졸업예정자들에게 졸업 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, 취업에 활용
- 주요내용 ① 필기시험(3월), 서류심사(4월), 면접시험(6월), 최종 발표(7월) → (변경)필기시험(10월), 면접시험(12월), 서류심사(다음 해 3월), 최종 발표(다음 해 3월)  
※ 다음 해 2월 졸업예정자가 필기시험(10월) 응시 가능  
※ 2016년은 상·하반기(3월, 10월) 실시
- 시 행 일 2016년

## 11.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

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☎ 02) 2100-6364

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'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'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.

-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, 사회성 발달,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도울 것입니다.
- 또한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.

(참고)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☎ 1577-1366

###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

- 추진배경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확대
-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및 부모  
② 지원기관 : (2015년) 시범사업 2개소 → (2016년) 전국 80여 개소  
③ 신청방법 :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
※ 프로그램 내용

영역	주요내용
부모·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	자아정체성 확립, 가족상담, 부모교육(부모역할, 부모-자녀 의사소통 스킬 습득, 갈등관리 등) 가족통합캠프 운영 등
사회성발달 프로그램	사회성 진단, 청소년 동아리활동(자조모임), 봉사활동, 리더십캠프,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
미래설계 프로그램	동기부여, 적성검사, 진로소양교육, 진로설계, 직업체험활동 등 지원
위기사례 지원	심층상담, 미술·음악·놀이치료 등
유관기관과의 연계	청소년상담 복지센터, 레인보우스쿨,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, 청소년수련시설,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 등과 연계

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2. 한부모(미혼모·부)가족 지원 강화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☎ 02) 2100-6346

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이 지원되었으나,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.

(참고) 신청 및 문의: 거주지 주민센터

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2016년부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2항)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참고) 신청 및 문의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
(참고)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: 「한부모 상담전화 1644-6621」, 위드맘 홈페이지(withmom.mogef.go.kr)

### 한부모(미혼모·부)가족 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
- 주요내용
  - 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: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→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(자녀연령 제한 삭제)
  -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지원대상: 출생신고가 안된 자녀 양육 미혼부 지원불가 →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부터 법률지원 가능
    - ※ 자녀 출생신고 절차지원 및 출생신고 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3.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☎ 02) 2100-6352/6350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(2015년)6,000원에서 (2016년)6,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,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됩니다.

- 정부 미지원 유형(정부지원이 없는 유형)에 해당할 경우, 소득판정 절차 없이도 아이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 상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

소득유형	기준 중위소득	영아종일제 0~1세 (월 130만원, 200시간)		시간제(시간당 6.5천원)			
				A형		B형	
	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60% 이하 (264만원)	91만원	39만원	4,875원	1,625원	4,225원	2,275원
나형	85% 이하 (374만원)	65만원	65만원	2,925원	3,575원	-	6,500원
다형	120% 이하 (527만원)	39만원	91만원	1,625원	4,875원	-	6,500원
라형	120% 초과	-	130만원	-	6,500원	-	6,500원

※ (A형)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

2016년부터 영아종일제 '라'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,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(복지부)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
(참고)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 시스템 온라인 신청,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국번없이 129

## 14.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신규 지원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☎ 02) 2100-6385 / 6387

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해바라기센터\*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, 성폭력 피해상담소\*\* 국비지원은 4개소,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\*\*\* 국비지원은 1개소를 확대합니다.

\* (해바라기센터)여성가족부-시·도-(지방)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·수사·법률·의료·심리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

\*\* (상담소) 상담,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인도, 수사 및 재판동행 등 지원

\*\*\* (보호시설) 주거지원, 피해자 상담 및 치료회복, 자립지원 등 지원

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.

###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신규 지원

- 추진배경 성폭력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① 해바라기센터 확충(36개소 → 37개소)
  - ②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(100개소 → 104개소)
  -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비지원시설 확대(7개소 → 8개소)
  - ④ 성폭력 상담원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제외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5.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☎ 02) 2100-6395/6396/6398

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.

-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, 취업·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,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, 취·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(2015년) 10개소 → (2016년) 11개소

### 자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 현황(2016년 1월 기준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11	1	1	1	1	1	1	-	2	-	-	-	1	1	-	-	1

성매매피해 상담소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·법률 등 상담 지원이 강화됩니다.

- 상담소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구조, 현장방문 상담·홍보, 지원시설에 피해자 연계, 피해자 건강진단 및 치료 등 의료지원,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(2015년) 26개소 → (2016년) 27개소

###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화

- 추진배경 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접근성 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(10개소 → 11개소)
  - ② 성매매피해 상담소 확충(26개소 → 27개소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6.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

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☎ 02) 2100-6426

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,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.

- 10세 이상 남아(男兒)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,
-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합니다.

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

2015년 12월 31일 기준, 단위: 개소, 호

구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가족보호 시설	20	2	1	1	-	1	1	-	-	1	2	2	2	2	-	3	2
임대주택	246	10	42	20	18	20	12	28	24	10	11	-	10	-	-	32	9

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적·체계적인 긴급상담·보호, 관련기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, 보호시설 입소자(비수급자)에 대한 주·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.

※ 1366긴급피난처 전담인력: (2015년) 18명 → (2016년) 36명

※ 생계비: (2015년) 491백만원 → (2016년) 621백만원

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간을 「가정폭력 추방주간」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.

###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확대

-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
-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(20개소 → 21개소) ②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(246호 → 266호) ③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증원(18명 → 36명) ④ 보호시설 입소자(비수급자) 생계비 지원확대(491백만원 → 621백만원) ⑤ 가정폭력 추방주간(신설): 매년 11월 25일 ~ 12월 1일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7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

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☎ 02) 2100-6429, 6430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.

- 2016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21%(2015년 월 104만 3천원 → 2016년 126만원), 간병비는 전년 대비 39%가 인상(2015년 1인 평균 월 75만 7천원 → 2016년 105만 5천원) 됩니다.
- 또한,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5만 6천원에서 37만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확대됩니다.

- 2015년 시범실시 된 초·중·고 「일본군 '위안부' 바로 알기」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.
- 아울러,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'위안부' 기록물을 국내·외에 전시하고, 국외의 일본군 '위안부'관련 신규 사료도 조사·발굴할 계획입니다.

###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

-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고조
- 주요내용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증액 지원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:1 맞춤형 지원 ③ 「일본군 '위안부' 바로 알기」 교육 전국 확대 실시 ④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추진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.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

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☎ 02) 2100-6888

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,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,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- 금번 개혁에서는 기여율 단계적 인상(7% → 9%, 2016년 8%),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(1.9% → 1.7%, 2016년 1.878%) 연금수령연령 단계적 연장(60세 → 65세, 2022년 61세 → 2033년 65세) 등 ‘더 내고·덜 받고·늦게 받는’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
-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향후 5년간(2016년~2020년) 연금이 동결되고,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 되고,
  - 일부 정지 소득기준\*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
  - \*근로자평균임금월액(337만원) → 평균연금월액(224만원)

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.5조원 절감되고,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- 또한, 공무원연금의 수익비(연금총액/보험료총액)가 종전 2.1배에서 국민연금(1.5배) 수준으로 조정되어 공적연금간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.

(참고)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| 인사소식 | 언론뉴스 | 보도자료 |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성과

###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①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(2016년 → '2020년) 동결
  - ② 연금 기여율 인상(7% → 9%, 2016년 8%) / 지급률 인하(1.9% → 1.7%, 2016년 1.878%)
  - ③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(60세 → 65세 / '2022년 61세 → '2033년 65세)
  - ④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,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2.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

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☎ 02) 2100-6784

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’가 2016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행됩니다.

-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,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%, 의상자의 배우자·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%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.
-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 득점)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,
  -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(참고)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| 보도자료 | 의사상자,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

###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

- 추진배경 의사상자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
- 주요내용
  - ① 대상시험은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
  - ② 가산 점수는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를 부여함
    - 의사자 배우자 또는 자녀, 의상자(부상등급 1급 ~ 6급): 과목별 만점의 5%
    - 의상자(부상등급 1급~6급) 배우자 또는 자녀: 과목별 만점의 3%
  - ③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시 행 일 2015년 11월 19일

### 3.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

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☎ 02) 2100-6735

정부에서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2014년도부터 일괄채용하고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 다른 경력경쟁채용과 동일하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습니다.
-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선발시험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> 현행법령 > 공무원임용령 참조

####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현황

-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
- 주요내용 ① 시간선택제 경력경쟁 채용 요건 완화(퇴직 후 3년 → 퇴직 후 10년)  
② 임용대기 기간 축소(결원발생시 임용 → 즉시 임용)
- 시 행 일 ① 2015년 9월 25일  
② 2015년 11월 19일

### 1.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 ☎ 02) 2110-3166

특허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
- 이에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통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.
- 다만, 현재도 가장 많은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국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.

## 2.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

법무부 국적과 ☎ 02) 2110-4127

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「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」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- 생계유지능력기준이 1998년도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자산 3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,
-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.  
\*2014년도 일인당 국민소득(GNI) : 2,968만원
- 다만, 혈연적·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,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(F-4)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 > 법무뉴스 > 보도자료 > 일반귀화허가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

###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일반귀화 신청자는 혈연적·지연적 관계가 적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국민 정체성 뿐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민과의 조화 중요
- 주요내용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자산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또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으로 신규 적용
- 시행일 2016년 3월 1일

## 1.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

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☎ 044) 200-6566

국민들이 입법예고의 내용을 확인하고,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없앨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국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으나, 2016년 4월부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 
-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법령안 개정 전문과 신·구조문대비표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서,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·설명자료 등을 함께 게재하여 국민들이 법령개정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또한,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하여,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입법예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겠습니다.

###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

- 추진배경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입법예고 제도 개선
- 주요내용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
  - ① 모든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실시
  - ② 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개정 내용에 관한 충실한 자료 제공
  - ③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 구현
- 시행일 2016년 4월 21일

## 1.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

통일부 이산가족 콜센터 ☎ 02) 1644-2381 | 대한적십자사 ☎ 02) 3705-3652

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
\*실태조사는 「이산가족법」에 따라 5년마다 실시

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·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- 오래전에 신청을 하여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, 동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
-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분과,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(홈페이지, 전화, 팩스, 우편, 모바일 등도 가능)

※ 아울러,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도 신청바랍니다.

대한적십자사 ☎ 02) 3705-3652

(참고)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 : reunion.unikorea.go.kr

###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

- **관련근거**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제6조
- **조사개요**
  - ① 기간 : 2016년 3월~5월
  - ② 조사대상 : 남북 이산가족 (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)
  - ③ 방법 : 온라인·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·방문 조사
- **안내문의**
  - 통일부 이산가족과 ☎ 02) 1644-2381
  - 대한적십자사 ☎ 02) 3705-3652

## 1.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☎ 044) 200-7752

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공익신고 대상은 180개 법률 위반사항에 한정되었으나, 2016년 1월 25일부터는 279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됩니다.
- 또한,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,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전문신고자(파파라치)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,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였습니다.

(참고)

- 국가법령정보센터 > 법령 > 공익신고자 보호법, 시행령

-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> 위원회소식 > 보도·해명자료 > 선박안전, 아동학대,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.

### 2016년 공익신고제도 주요 변경사항

- **추진배경**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①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180개 → 279개)
  -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
    -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
    -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
    -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(형벌, 징계 → 형벌, 징계, 행정처분)
  - ③ 공익신고 보상제도 변경
    - 보상금 지급대상(내외부 공익신고자 → 내부 공익신고자)
    - 보상금 확대(최대 10억원 → 최대 20억원)
- **시행일** 2016년 1월 25일